

보호지역 기본법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46
----------	-------

발의연월일 : 2026. 1. 9.

발 의 자 : 박해철 · 김문수 · 김 윤
송재봉 · 조인철 · 박용갑
이용선 · 민병덕 · 이광희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2022년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30×30 목표(전 지구 육상·해양의 30% 이상을 2030년까지 보전·복원)는 우리나라 역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제적 책무임.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가 필요하나, 현행 제도는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분산·파편화되어 있어 관리체계의 비효율과 중복 규제, 법적 정합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

또한 생물다양성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 생태계 관리를 위한 구역 지정·관리의 실효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하여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누적됨에 따라 신규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호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확대를 위한 통합적 상위 기본법을 마련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지정·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권익 보장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호지역 관리 기반을 확립하고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정부가 10년마다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검토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관계 기관은 5년마다 보호지역의 관리 목표 달성 여부 및 관리 활동 효과성을 평가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며 예산 배분·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 라. 국무총리 소속 국가보호지역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지역 정책 심의·조정, 관리 효과성 평가, 갈등 조정, 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마. 국가는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적 연결성 복원사업을 시행·지원하고, 개발사업자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 바. 국가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 등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 제공·접근성 보장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두도록 함(안 제19조).
- 사.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제DB와 연계하도록 함(안 제20조).
- 아.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 보호지역 지정 등에 따른 보상, 보호지역 관련 교육·홍보,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연구 및 국제협력 등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 자. 국가가 보호지역에 대한 교육과정을 학교교육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차.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기후변화 영향, 복원 기술 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보호지역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3. “보전”이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온전성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생태계의 기능과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보호지역”이란 생물다양성, 자연경관, 지질학적 특성, 역사적·문

화적 가치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지리적으로 구획된 지역을 말한다.

6. “생태적 연결성”이란 보호지역 간 또는 보호지역과 그 주변 지역 간의 생태계적 연속성과 이동 가능성을 말한다.
7. “생태통로”란 도로·댐·수중보(水中洑)·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8. “생태네트워크”란 보호지역으로 구성되고 생태적으로 연결된 공간 체계를 말한다.
9. “관리효과성 평가”란 보호지역의 관리 목표 달성 정도와 관리 활동의 효과를 과학적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보호지역은 종(種), 서식지, 유전적 다양성 등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요소를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
2. 보호지역은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3. 보호지역의 관리는 과학적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관리 목표의 달성 정도 및 관리활동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계획과 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보호지역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보호지역의 관리로 인한 비용과 혜택은 공정하게 분담·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호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알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6.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관리 활동 및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보호지역의 보존 및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이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보호지역의 관리는 국토 및 자원이용계획 등 관련 분야의 계획과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호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보호지역의 생태적 건강성과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보호지역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와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민간,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보호지역의 지정·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호지역의 지정·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지역

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 생태적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관련 국토계획·환경계획을 고려한 국가보호지역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지역의 체계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제 협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목표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의 지정, 분류, 해제 및 변경에 관한 기준과 관리 원칙
4.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생태적 연결성 강화 방안
5. 보호지역의 관리효과성 평가 체계 및 운영 기준
6. 보호지역 관리 인력 양성,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7. 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자원 조달 및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
8. 보호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보호지역의 체계적·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

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호지역 관리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호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지역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지역의 핵심 가치에 대한 평가
2. 관리 비전 및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의 설정
3. 핵심구역, 완충구역, 이용구역 등 구역의 설정
4. 생물다양성의 위협 요인의 분석 및 대응 방안
5. 보전 및 관리 전략
6.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
7. 이해관계자 참여 방안
8. 운영 계획 및 예산 확보 방안
9.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 결과 반영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호지역 관리 기준) 보호지역은 규모·관리 목표·생물다양성

의 위협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 인력의 규모
2. 관리 시설 및 장비
3. 주요 생물다양성 지표 및 생물다양성의 위협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 효과성 평가) ① 보호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호지역의 관리 목표 달성 여부 및 관리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리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효과성 평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차기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배분 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효과성 평가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보호지역위원회 등

제10조(국가보호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보호지역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과 그 시행에 관

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호지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 국가유산청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환경, 생태, 해양, 법률 또는 공간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위원의 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본계획, 관리계획의 점검결과 및 관리 효과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 지정, 분류,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호지역 정책 및 계획의 부처 간 조정과 갈등 해결에 관한 사항
5. 보호지역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6. 보호지역 관련 재정 배분 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참여 및 공정한 혜택 공유에 관한 사항
8. 보호지역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보호지역의 통합적 관리와 정책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전문가·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보호지역 또는 관련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제출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호지역의 분류·지정 및 관리 기준 등

제17조(보호지역의 분류 및 지정) ① 국가는 보호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1. 고유종, 멸종위기종, 서식지의 대표성 등 생물다양성의 가치
2. 생태계의 대표성 및 고유성
3. 생태적 연결성에 대한 기여도
4. 생태계서비스 기능의 중요성
5. 개발 압력, 기후변화 영향 등 생물다양성의 위협 및 취약성의 정도
6. 해당 지역의 복원 가능성 및 관리 용이성

② 보호지역은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보호지역 관리 범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분류한다.

1. 학술적 엄정 보호구역: 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학술적 연구 또는 환경 모니터링을 위하여 엄격한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원시 야생 보호구역: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고 원시 그대로의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영구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지역
3. 국립공원형 보호구역: 생태계 보호와 함께 생태탐방 및 교육 등

국민의 건전한 여가와 휴양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자연물 보호구역: 보전 가치가 높은 특이한 자연물이나 지형·지질학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5. 서식지 및 종 관리구역: 특정한 생물종이나 서식지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6. 경관 보호구역: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생태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하여 이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7. 자원 관리 보호구역: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허용하는 지역

③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지역의 분류 및 지정·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생태네트워크의 구축 및 생태적 연결성의 확보 등) ① 국가는 기존 기반시설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생태적 연결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적 연결성 개선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로, 철도, 댐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 또는 건축하는 자는 생태적 연결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상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자 참여 등) ① 국가는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보

호지역의 지정·변경·해제 등 전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보호지역의 보전 및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과 혜택이 공정하게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지역의 토지소유자,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 등 전 과정에 걸친 참여
2. 보호지역 관련 정보의 충분한 제공 및 접근성 보장
3.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의견 반영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참여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호지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위하여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지역의 지정, 분류, 해제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
2. 보호지역 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변화에 관한 정보
3. 보호지역 관리 효과성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4. 재정 투입 및 성과 등 재정 현황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보호지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정보 및 소관 보호지역 관련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갱신하여야 하며, 정보의 표준화와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국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보호지역 정보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21조(보호지역관리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보호지역의 지정, 관리, 평가 및 관련 제도의 이행을 위하여 보호지역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보호지역에서 발생하는 수입
5. 국제 협력 기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보호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보호지역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국가보호지역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3. 보호지역의 지정·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4. 제2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제25조에 따른 보호지역 보전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지원

6. 제26조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7. 제27조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지원

8. 제28조에 따른 국제협력

9.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국민 인식 증진 및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의 가치와 중요성 및 생물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보호지역 및 생물다양성 보전 관련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여 보호지역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민 인식 증진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시민 참여 프로그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호지역 보전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

1. 시민과학 프로그램
2. 자원봉사 활동
3. 생태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4. 보호지역 공동 모니터링
5. 지역사회 기반의 보전 활동 및 파트너십 구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보호지역 인근 지역사회가 보전 활동의 실질적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등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육성
2. 보호지역의 관리 및 모니터링과 관련 지역 일자리 창출
3. 지역 주민 대상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② 국가는 보호지역과 관련된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역사회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역 공동체의 보전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당 공동체가 자긍심을 가지고 보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 및 연구 지원) ① 국가는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조사,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는 과학적 지식과 지역 고유의 생태 관련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주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다양성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예측
2. 기후변화의 영향 평가 및 보호지역의 적응 방안 연구
3. 생태계 복원 기술 및 적용

4. 보호지역 관리기법의 개선 및 개발

5. 보호지역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6. 지역 고유의 생태 관련 경험 및 지식의 조사·발굴 및 활용 방안
연구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국가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결정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국제 기준의 준수 및 국제협력) ① 국가는 보호지역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 협약」,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등 관련 국제 협약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보호지역의 정의, 분류, 관리 기준 및 관리 효과성 평가 등에 관하여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지침을 적극적으로 참조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보호지역 관리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제협력을 통하여 도출된 성과를 국내 보호지역 정책과 관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국제기구와의 기술 및 정책 협력

2. 국제기구와의 공동 연구 수행 및 기술 교류

3. 국제기구와의 인력 교류 및 역량 강화

4. 국제회의의 참여 및 성과 공유

5. 그 밖에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제 협약 및 기준의 준수, 국제협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